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장애인 10년 (2013-2022) 최종평가를 위한 정부간 고위급 회의

자카르타 현장 및 온라인, 2022년 10월 19-21일

아태장애인 10년(2023-2032)에 관한 자카르타 선언

1. 우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 이하 에스캡)의 회원국 및 준회원국의 장관과 대표로서 2022년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자카르타 현장 및 온라인으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 장애인(이하 아태장애인) 10년 (2013-2022) 최종평가를 위한 정부간 고위급회의에 참석하여 본 선언을 채택하였다.
2. 우리는 장애인권리협약¹은 인권이자 개발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3. 장애인 등 회원국들이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비롯하여 2030 지속가능개발 의제를 총회가 채택하면서 회원국들에 대해서는 2030 의제를 이행하면서 무엇보다도 어떠한 종류의 차별 없이 모두를 위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 보호, 증진해야 한다고 확인했던 유엔총회 결의안 70/1호 (2015.9.25)를 상기한다.
4. 총회가 장애출현율은 나이와 함께 증가하여 많은 노인들이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을 인정한 바 있는 제 2차 세계 고령화 총회(Second World Assembly on Aging)의 후속작업에 관한 총회 결의안 76/138호(2021.12.16)에 주목하며, 젠더와 장애의 관점을 고령화 관련 정책 행동 전반에 반영·강화하고, 연령·성별·장애 기반 차별에 대응하여 타파하며, 정책 설계 및 이행을 위한 연령·성별·장애 별로 분리된 정보의 수집, 활용을 위해 우리는 회원국들에게 노인 빈곤 경감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특히 고령의 여성 및 노인 장애인을 비롯한 고령층 고유의 욕구에 기반하여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

¹ 유엔, *조약 시리즈(Treaty Series)*, vol. 2515, No. 44910 호.

5. 장애인은 재난으로 인해 불균형적으로 큰 영향을 받게 됨을 인식하며, 우리는 무엇보다 장애인의 역량 강화와 포용적이고 접근 가능하며 비차별적인 재난 위험 경감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한 '재난 위험 감소를 위한 샌다이 프레임워크(2015-2030)²를 상기한다.
6. 우리는 아태장애인 10 년(2013-2022)에 관한 장관 선언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이하 아태지역) "장애인의 권리실천을 위한" 인천전략³을 승인했던 에스캡 결의안 69/13 호(2013.5.1)와 인천전략 이행 가속화를 위한 행동계획을 포함한 베이징선언을 승인한 에스캡 결의안 74/7 호(2018.5.16)를 상기한다.⁴
7. 우리는 더 나은 미래 건설을 위해 에스캡 결의안 77/1 호 (202.4.29)와 78/1 호(2022.5.27)를 재확인하고, 2030 어젠다에 따른 평등하고 지속 가능하며 포용적인 회복 전략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8. 우리는 장애인의 권리 증진·보호·실현을 위한 국가 및 하위지역 이니셔티브들을 지원함에 있어 정부 간 조율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채택된 하위지역 프레임워크인 '장애인 권리를 위한 태평양 프레임워크'⁵ 와 '아세안 마스터플랜 2025: 장애인 권리 주류화'⁶ 에 주목하고, 지역·하위지역·국가적 차원의 협력의 가치를 확인한다.
9. 우리는 인천전략 이행 가속화를 위한 행동계획을 포함한 인천전략 및 베이징선언 이행에 있어 에스캡 회원국 및 준회원국들이 이룬 진전과, 코로나 19 팬데믹 대응 및 회복, 재건을 포함하여 시민사회, 특히 장애인단체들이 기여한 바를 인정하고, 장애포괄적 사업 및 가치사슬 구현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부문 주체들의 결의 및 노력을 환영한다.
10. 아태지역은 급속한 인구 고령화를 겪고 있어 60 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22 년 14.3%에서 2050 년⁷에는 25.9%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노인장애인의 인구가 늘어날 수 있음에 우리는 주목한다.
11. 우리는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특히 여성, 아동, 청소년, 원주민, 노인, 지적 및 심리사회적 장애인들과 기타 취약 상황에 있는 장애인들은 많은 경우 여전히 삶의 모든 측면에서 차별과 물리적 장벽, 정보와 태도의 장벽에 부딪히고 있고, 코로나 19 팬데믹, 기후변화 및 기타 위기로 인한 불평등 심화로 장애인들이 불균형적으로 큰 타격을 받고 있음에 우려하며 주목한다.

² 총회 결의안 69/28 호, 부속서 II.

³ 에스캡 결의안 69/13, 부속서 I 및 II.

⁴ ESCAP/74/22/Add.1.

⁵ 2016 년 9 월 8-10 일 마이크로네시아 연방, 폰페이에서 개최된 47 차 태평양제도포럼에서 승인됨.

⁶ 2018 년 11 월 13-15 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33 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채택됨.

⁷ 유엔, 2022 세계인구전망: 특별 집계, 온라인판.

12. 국가·지역·국제적 차원에서 장애인 상황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통계가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어, 공식 통계, 정책 및 프로그램에서의 장애인 배제 요인이 되고 있음에 주목하고 우려하며, 이와 관련하여 2030 의제에서 장애 분류 데이터를 촉구함에 이를 환영한다. 이는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향한 진전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접근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양질의 적시 데이터 가용성을 크게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한 것이다.
13. 우리는 접근성 제고와 사회 전반에 대한 장애인들의 참여를 증진하는 차원에서 각국 정부가 사람들의 회복력 함양 및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함에 주력하면서 코로나 19 로부터 지속가능한 회복을 이루기 위해 행동을 취하고 자원을 할애하였음을 확인하고, 기술 혁신 및 디지털 전환의 강력한 잠재력 또한 인지한다.
14. 우리는 코로나 19 팬데믹, 자연재해, 기후변화 및 기타 위험요인들로 인한 도전과제들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인구 집단들과 각 국가 내 및 국가들 간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장애포괄적 개발 성과를 보호, 강화하기 위해서는 에스캡 회원국 및 준회원국,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시급히 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또한 장애포괄적 개발 정책 및 프로그램 강화를 위해 적절한 예산 할당, 혁신 및 협력이 이루어질 것을 촉구한다.
15. 우리는 장애인의 권리를 증진하고 2030 어젠다와 장애인권리협약의 완전한 이행을 가속화하는 데 있어 인cheon 전략 이행 가속화를 위한 행동계획을 포함한 인cheon 전략 및 베이징선언의 지속적인 관련성과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16. 우리는 아태장애인 10년(2023-2032)을 선포하여 인cheon 전략 이행 가속화를 위한 행동계획을 포함한 인cheon 전략 및 베이징선언의 효과적 이행에 주력하고, 이행을 위한 전략적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모든 관련 이해관계자들, 특히 장애인단체 및 민간부문 주체들과의 협력 하에 범사회적 접근을 통하여 장애포괄적 개발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하며, 다음과 같이 장애인 권리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행동에 박차를 가하고자 한다:
 - (a) 장애인권리협약 비준이나 가입이 이루어지면, 국가 및 지방의 입법에 대해 종합적, 정기적 검토를 적절히 수행하고, 관계부처 및 정부의 모든 단계별 협약 이행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며, 법령 시행에 관여된 인력 전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국가 정책, 프로그램 및 예산에 정당한 편익이 제공되도록 통합하고, 협약의 이행을 증진·보호·모니터링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적절한 경우 개발하고 강화하여, 국내법이 장애인권리협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 (b) 장애 아동 및 청소년 단체를 통한 이들과의 적극적이고 긴밀한 협의를 포함하여 전 연령대의 다양한 장애를 가진 여성 및 남성이 정당한 편익을 통하여 정책, 프로그램 및 정치 과정의 기획, 이행 및 의사 결정에 의미 있는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 적절한 경우 장애인 및 장애인 대표단체들과 정부 각급 및 타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역량을 구축한다;

- (c) 여러 유형의 장애인과 여성, 아동 및 노인 장애인의 고유의 욕구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는 차원에서, 정보통신 기술 시스템, 재난 위험 및 공중 보건 비상사태 관련 필수 정보 및 서비스와 기타 공공서비스를 비롯한 물리적 환경, 대중교통, 정보통신의 접근성을 도심 및 농촌 지역에서 모두 제고하고, 최신 국제 접근성 기준 및 지침에 맞추어 국가 기준 및 지침을 수립하여 상품, 서비스, 장비 및 시설의 유니버설디자인을 도모한다;
 - (d) 공공조달 대상 인프라,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유니버설디자인 및 접근성 조치 적용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포괄적 공공조달 정책을 채택하고, 민간기업들이 자사 인력, 조직, 제품, 서비스, 시장 활동 및 공급망에 있어 장애포괄(disability inclusion) 주류화 조치를 취하도록 인센티브 정책을 실시하며, 다양성과 포용성은 증진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 낙인, 고정관념 및 잘못된 인식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은 삭제하도록 특히 소셜미디어를 포함한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부문 등의 업계 가이드라인 및 프로토콜의 개발을 활성화하여 민간부문이 보유한 기술혁신 및 재능 등 능력을 동원하도록 한다;
 - (e) 장애인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의 수립과 이행에 있어 성인지적 생활주기 접근방식(gender-responsive lifecycle approach)의 적용을 도모하면서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하도록 한다:
 - (i) 사회보호제도는 장애주류적 및 장애특정적 제도를 모두 제공하여 장애 아동과 장애 청소년, 여성장애인 및 노인장애인이 모두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ii) 인적자원 양성 전략과 정책, 프로그램의 필수 요소로서 장애아동을 위한 조기 발견 및 개입 서비스를 제공한다; (iii) 모든 장애인 학습자들이 포용적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iv) 성·재생산 건강 서비스 등의 정보 및 서비스에 대한 참여와 접근에 있어 장애소녀 및 여성(고령 여성장애인 포함)이 종종 경험하게 되는 차별 및 장벽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한다;
 - (f) 공인 국가기관 및 기타 인정받은 출처로부터 제공된 정보를 기반으로, 장애인 데이터 격차 해소를 위한 조치를 필요에 따라 취하고, 장애포괄적 개발의 이행 상황을 추적하기 위한 국가 및 지역적 차원의 역량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장애포괄적 정책 입안, 프로그램 기획 및 이행 전략에 도움이 되도록, 여러 부문에 걸쳐 성별, 연령 및 장애 여부에 따라 분리된 양질의 비교가능한 데이터를 생성하고, 2030 어젠다 및 기타 글로벌 및 지역 개발 프레임워크에 따라 이루어지는 자발적 국가검토에, 적절한 경우, 장애포괄적 개발 달성을 위한 이행상황 보고서를 반영하도록 한다.
17. 따라서 우리는 회원국 및 장애인 당사자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사무총장이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아시아태평양 지역 협력 플랫폼과 아태지역 내 유엔 국가 팀(UN country teams)들을 적절히 활용하여 다음 조치들을 취할 것을 요청한다:
- (a) 인천전략 이행 가속화를 위한 행동계획을 포함한 인천전략 및 베이징선언의 지속적인 이행과 2030 어젠다 및 아태장애인 10년(2023-2032)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장애포괄성 강화에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 (b) 본 선언이 지역 및 국가적 차원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요청이 있을 경우, 회원국 및 준회원국에 기술적 지원을 제공한다;
- (c)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체계에 따라 실시되는 자발적 국가 검토 시 장애 관점이 반영되도록, 국가 검토 과정 전반에 걸쳐 장애인 및 장애인 대표 단체들의 참여 매커니즘 구축하는 등 에스캡 회원국 및 준회원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원을 제공한다;
- (d) 본 선언의 효과적 이행을 지원하고, 인천전략의 목표 달성을 향해 나아가며, 아태지역의 2030 어젠다를 향한 진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아태장애인 10년 워킹그룹의 지침을 적절한 경우 지속적으로 활용한다;
- (e) 아태장애인 10년(2023-2032) 기간 동안 에스캡 회원국 및 준회원국의 본 선언에 대한 이행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2027년에 중간평가 및 2032년 최종평가를 위한 정부간 회의를 조직한다;
- (f) 본 선언의 검토 및 채택을 위해 제 79차 에스캡 총회에 본 선언을 제출한다.